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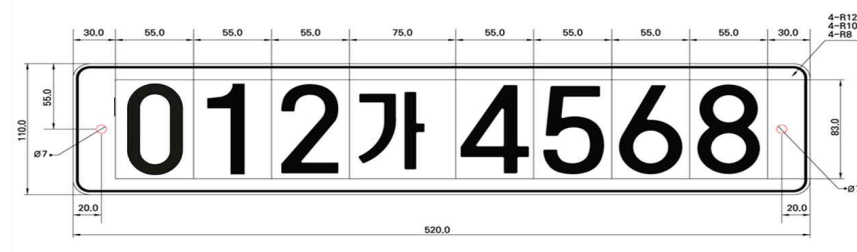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8.20. 공포, 2021.8.21. 시행)됨에 따라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 번호표를 도입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등록관청·용도 표시 삭제(안 제13조 제1항)
- 나.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신설(안 제13조제4항, 안 별표2의2)
- 다.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른 임시번호표 규격 개선(안 별표1)
- 라.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안 별표 2)



- 1) 기존 등록번호표의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하고, 기종을 의미하는 두자리 숫자(예 : 12)앞에 건설기계를 의미(자동차와 구별)하는 “0” 을 표기

- 3) 일련번호는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되, 오름차순으로 부여
- 4) 현장에서 육안으로 용도별(영업용, 자가용·관용) 구분이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 자가용·관용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 적용
- 5) 기종에 따라 다른 번호표 크기를 통일(3종→1종, 520×110mm)
- 마.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경찰청과 협의되었음
- 라. 기 타 : 1) -
 - 2) 입법예고(2021.0.0. ~ 0.0),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기종 및 등록번호”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기계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시번호표(제6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4항 관련)

1.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



가. 번호표 크기: 가로 520mm×세로 110mm

나. 재질: 목판

다. 색칠: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라. 번호: 발행월별 일련번호(예: 7월의 1호 → 07-0001)

마. 상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예: ○○건설기계)

바. 전화번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전화번호(예: ○○○-○○○○-○○○○)

사. 임시운행기간: 15일 이내(시험·연구용은 3년 이내)

2. 등록된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



가. 번호표 크기: 가로 520mm×세로 110mm

나. 재질: 목판

다. 색칠: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라. 번호: 현재의 등록번호(예: 012가4586)

마. 상호: 정비소 또는 검사소 명칭(예: ○○건설기계정비공장)

바. 전화번호: 정비소 또는 검사소의 전화번호(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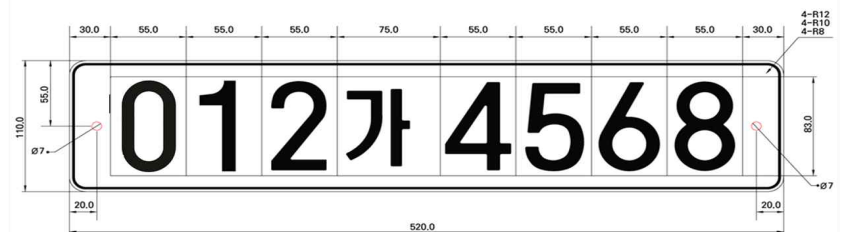
3. 비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제13조제3항)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가로 520mm×세로110mm×두께1mm



* “0”은 건설기계, “12”는 건설기계의 종류(27종), “가 4568”은 일련번호

나. 재질: 알루미늄 제판(KS D6701 A1050P "0")

2. 번호표의 색상

가. 비사업용(관용 또는 자가용) :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대여사업용 : 주황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색상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의한다. 단,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Delta E^*_{ab} \leq 3$ 으로 한다.

색상명칭	색번호표	색상명칭	색번호표	색상명칭	색번호표
주황색	L* = 57.18 a* = 35.06 b* = 41.13	흰색	L* = 89.10 a* = 0.58 b* = 3.95	검은색	L* = 25.70 a* = 0.10 b* = -5.48

라. 등록번호표에 표시되는 모든 문자 및 외곽선은 1.5mm 튀어나와야 한다.

3. 건설기계 종류의 구분

기종의 명칭	기종번호	기종의 명칭	기종번호
불도저	01	콘크리트펌프	15
굴착기	0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6
로더	03	아스팔트피니셔	17
지게차	04	아스팔트살포기	18
스크레이퍼	05	골재살포기	19
덤프트럭	06	쇄석기	20
기중기	07	공기압축기	21
모터그레이더	08	천공기	22
롤러	09	항타 및 항발기	23
노상안정기	10	자갈채취기	24
콘크리트벙칭플랜트	11	준설선	25
콘크리트피니셔	12	특수건설기계	26
콘크리트살포기	13	타워크레인	27
콘크리트믹서트럭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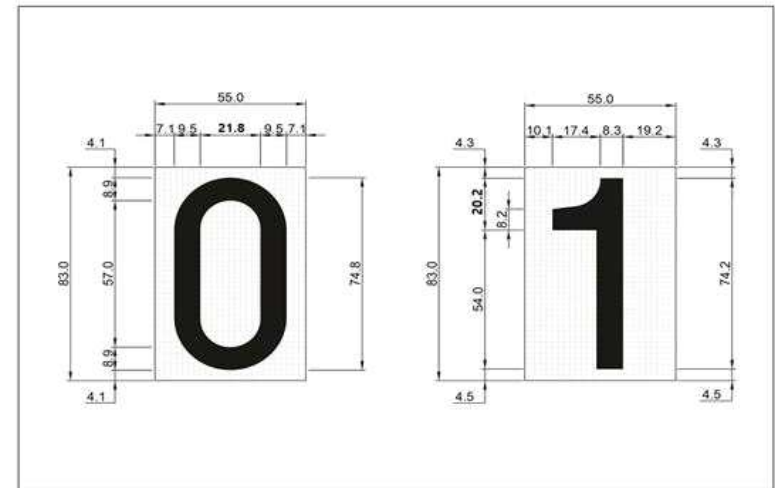
4. 일련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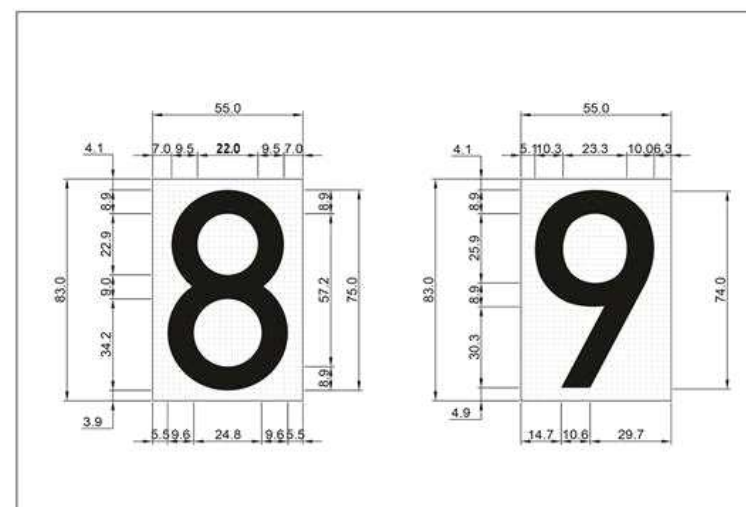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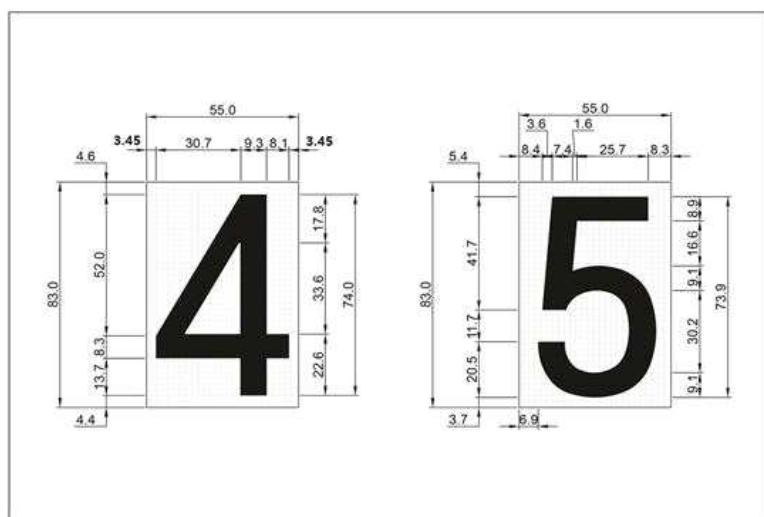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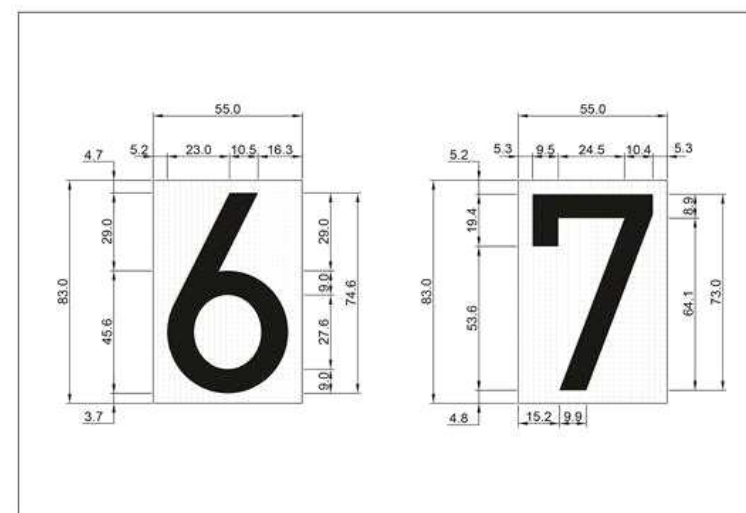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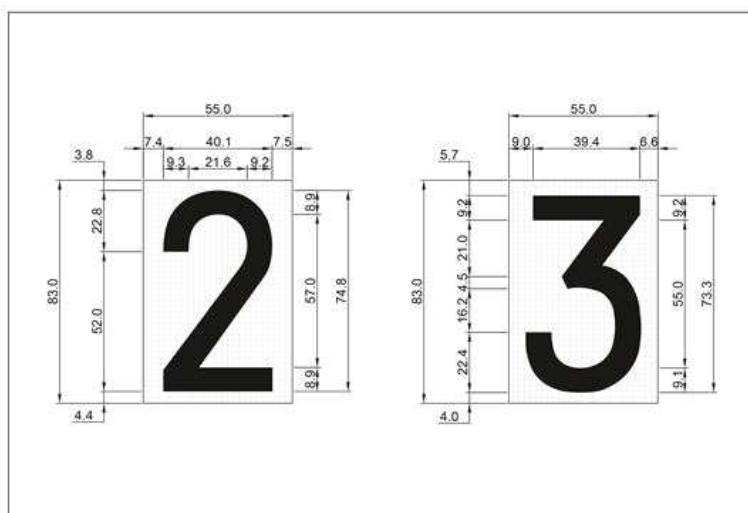
가. 한글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하, 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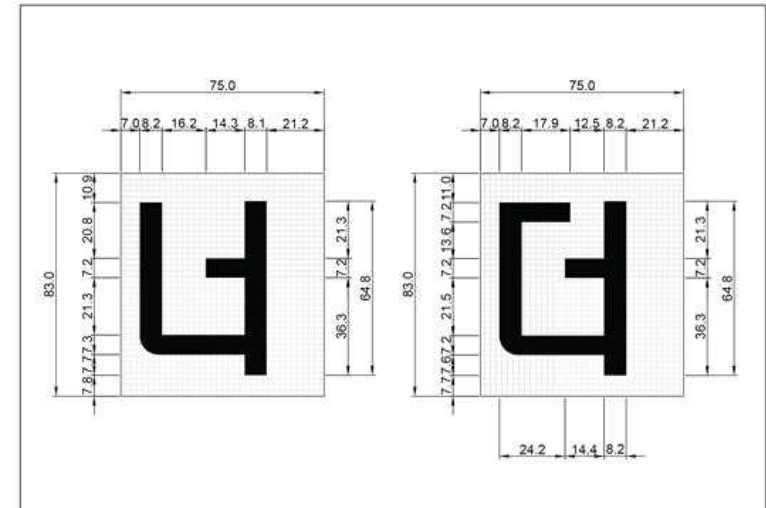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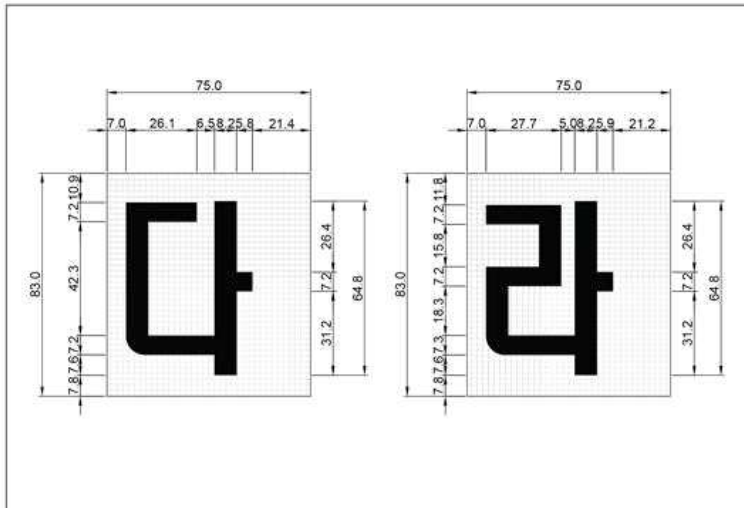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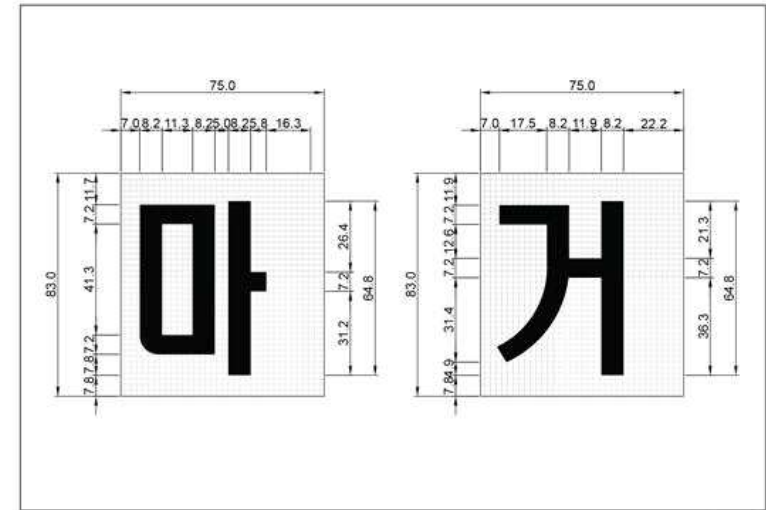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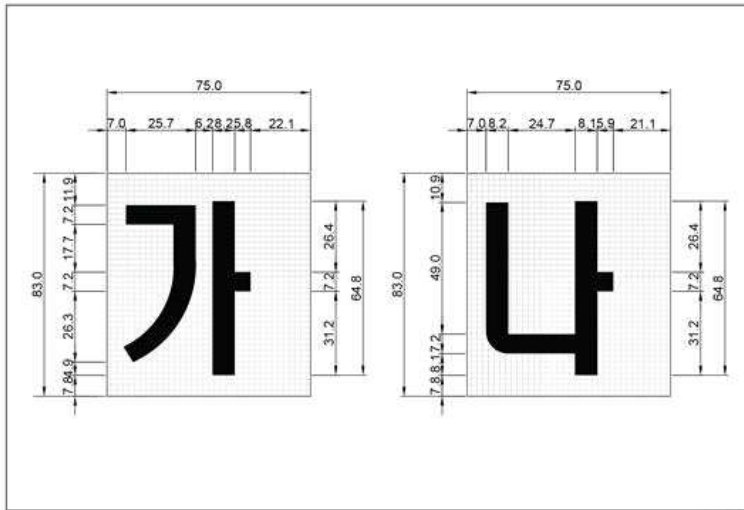
나. 숫자 : 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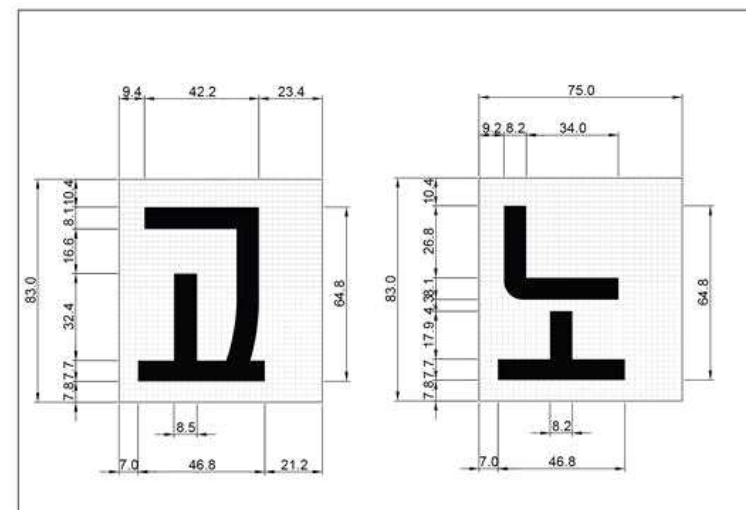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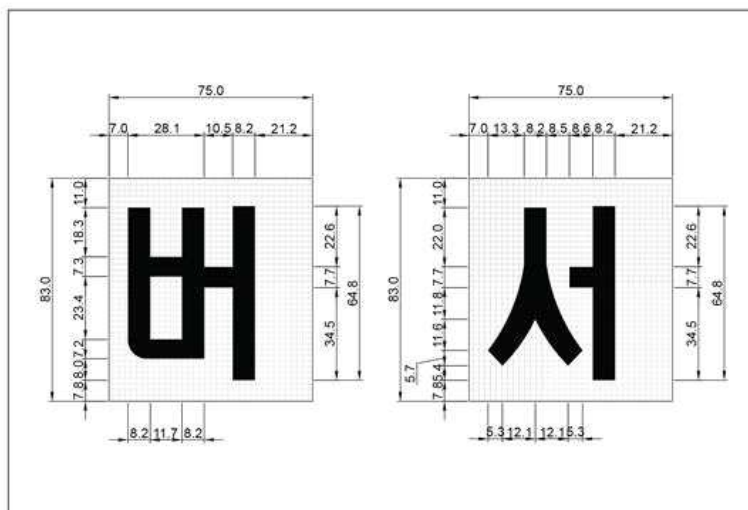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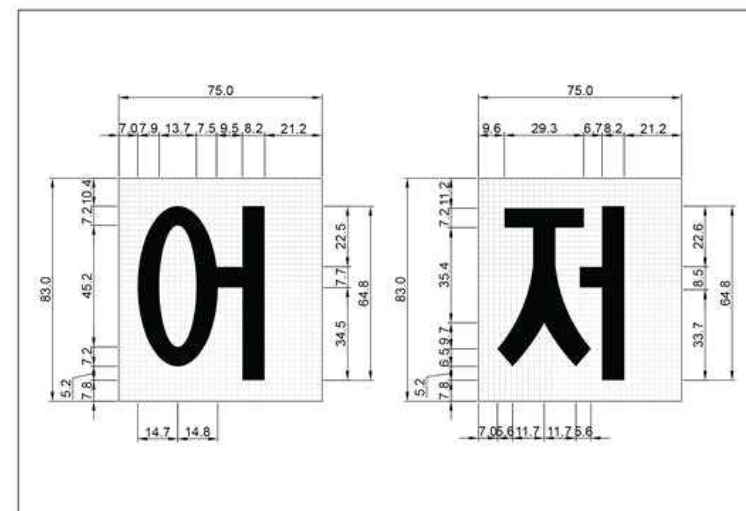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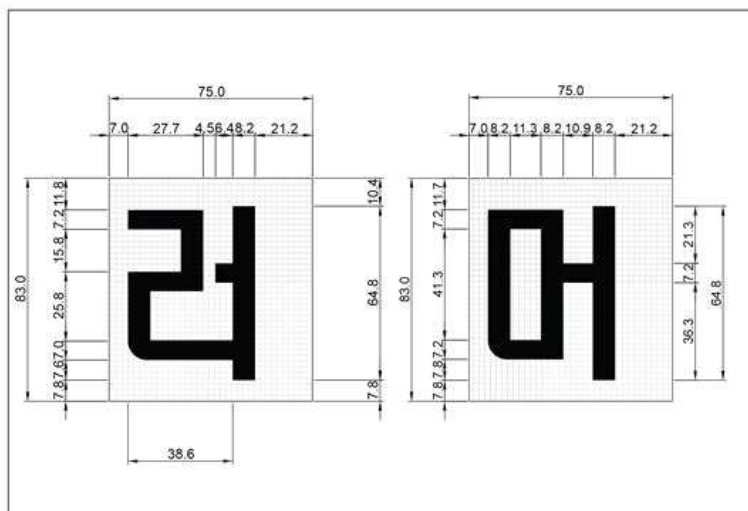
가. 한글과 용도별 숫자를 조합하되,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관용 예시 : “가0001~가0999” 부여 후 “나0001~나0999” 순으로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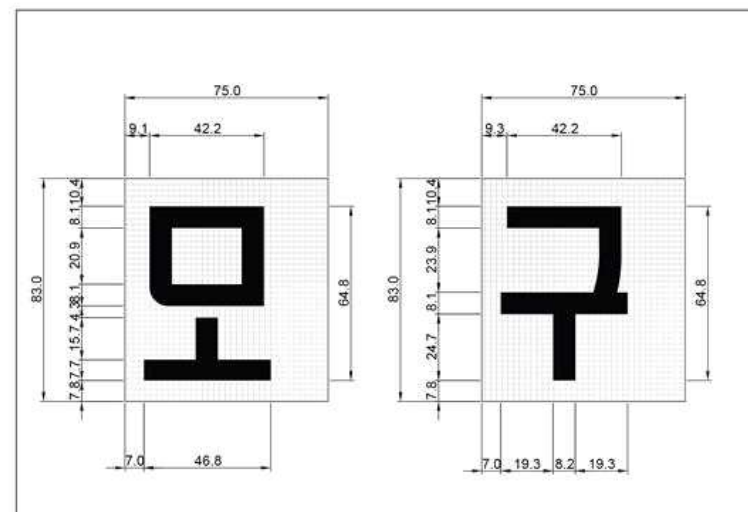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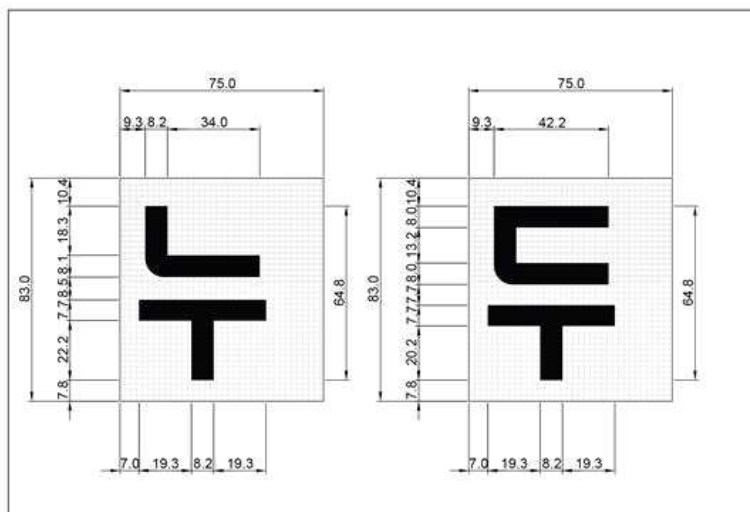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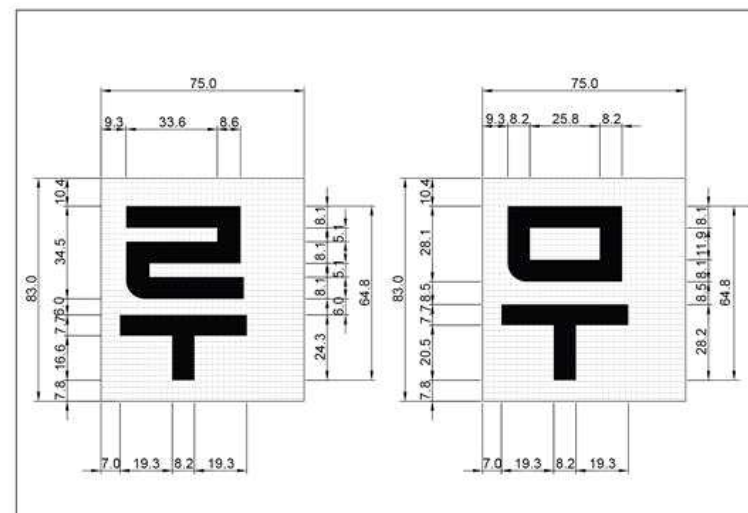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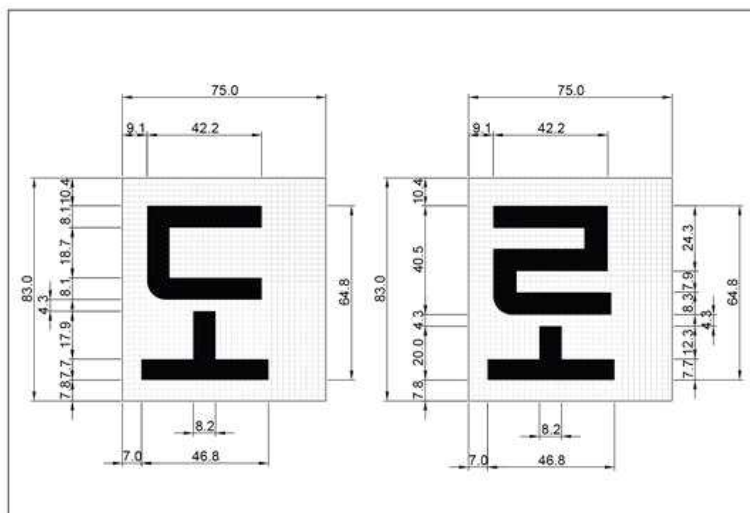
5. 문자 및 숫자의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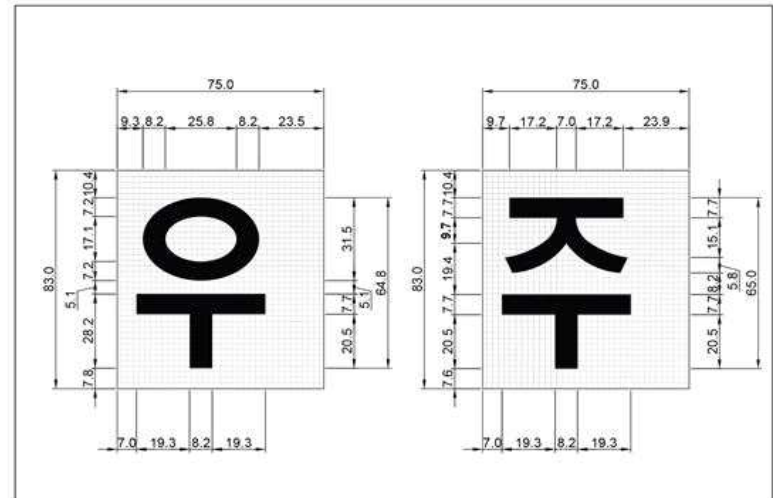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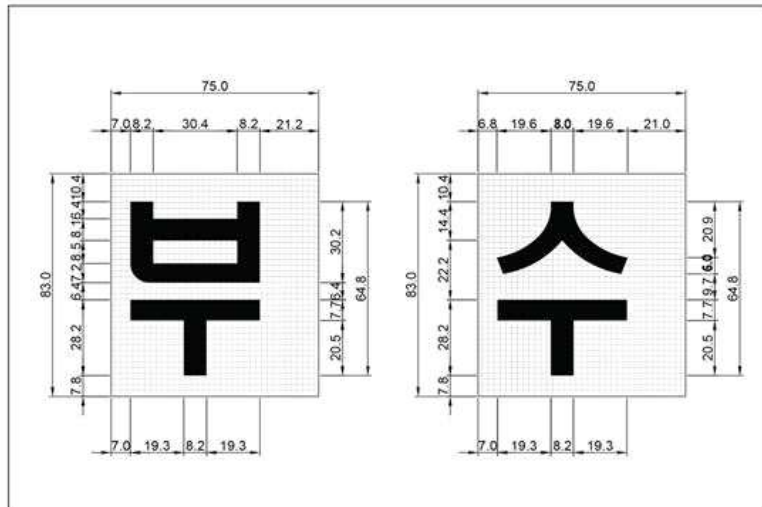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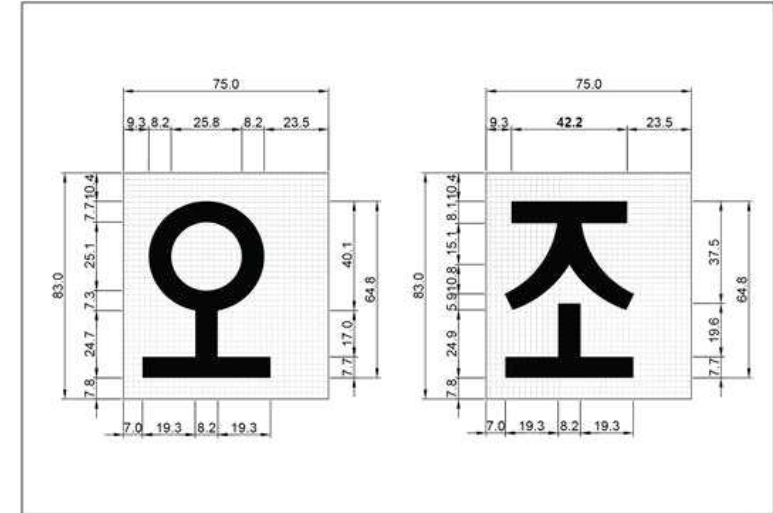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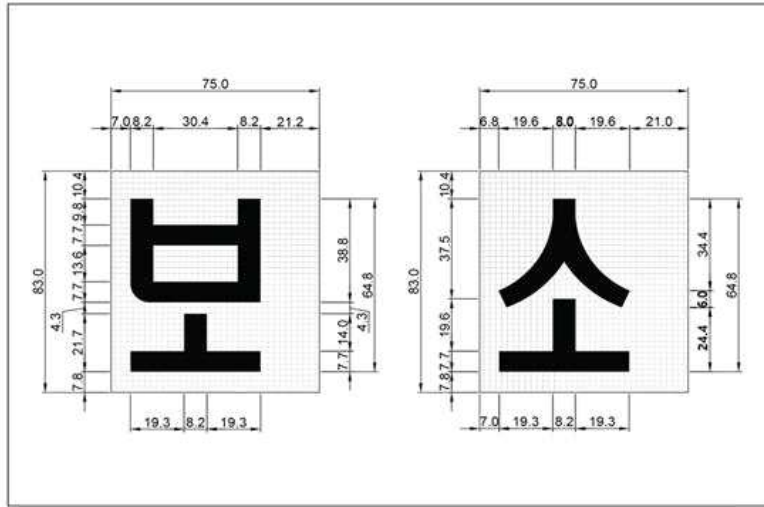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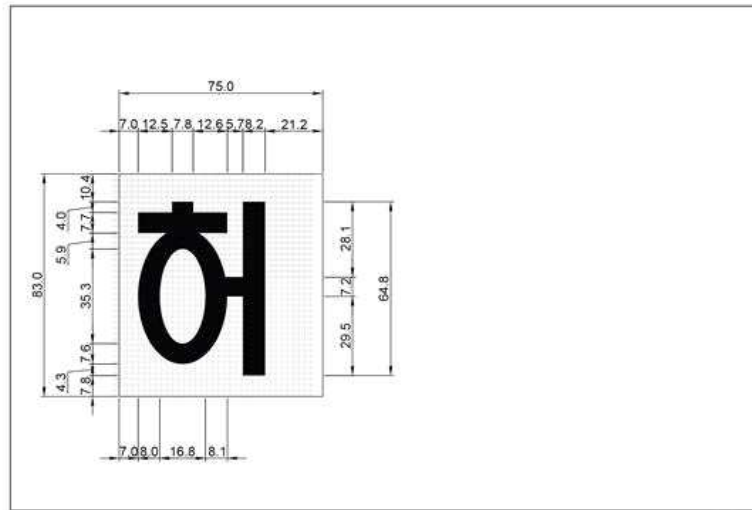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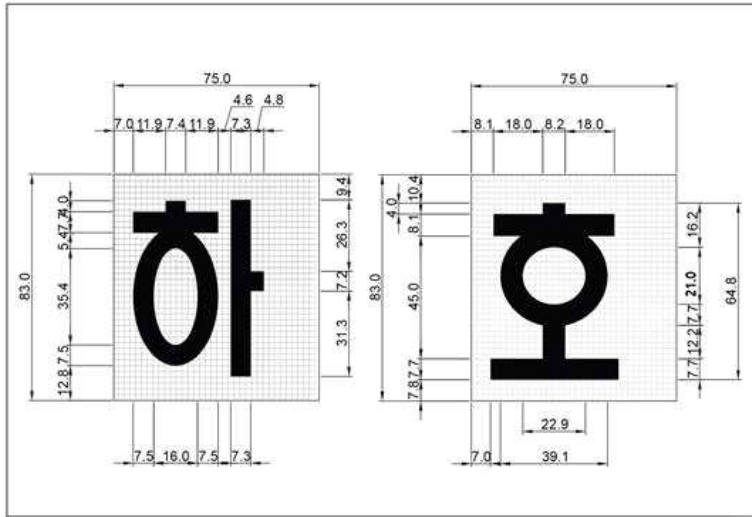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제13조제4항)

1. 색상 내후성 : 등록번호표의 색상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720시간 시험을 할 경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 가. 방사조도 : $0.35W/m^2$
 - 나. 파장범위 : 340nm(제논 아크등)
 - 다. 시험주기 : 빛에 노출/물분사(18분), 빛에 노출(102분)
 - 라. 시험온도 : $63 \pm 3^\circ C$
 - 마. 습도 : $50 \pm 5\%$
2. 내마모성 : 등록번호표의 문자 색상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가. 등록번호표와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 : $380 \pm 10mm$
 - 나. 모래분사노즐 직경 : 1.3mm
 - 다. 물과 모래 혼합액 : 물 1ℓ당 0.4mm 크기 표준 모래 25g
 - 라.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표에 작동압력 $6.0 \pm 0.5bar$, 유동율 $0.24 \pm 0.02 \ell/min$ 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
 - 마.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형질으로 등록번호표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표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3. 방수성 :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표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 가. 등록번호표를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circ C$ 까지 올리고 $65^\circ C$ 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
 - 나. 등록번호표를 챔버에서 꺼내 $21^\circ C$ 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형질으로 등록번호표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표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4. 인식성 : 등록번호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 중인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민간 등에서 설치·운용 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관리 되어야 한다.
5.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색상의 내후성, 내마모성, 방수성 시험은

6. 품질검사 : 제1호 및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규격 및 재질, 번호표 및 문자의 색상, 문자 및 숫자의 세부기준 등에 대한 품질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다.

7. 비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의 등록목적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하고,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무인 단속장비시스템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번호표의 식별과 인식여부에 대한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등록번호표는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정된 등록번호표로 교체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 ----- ----- -----기종 및 등록번호-----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④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2. <삭제>
3.~5. (생략)	3.~5. (현행과 같음)
6. <신설>	6. 건설기계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신설>	7.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